

# 제2편

## 학 칙



# 학 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건양사이버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이념과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조직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목적·목표) ①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은 참된 인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역사창조에 이바지하며, 인류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②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은 진리탐구, 역사창조, 인류봉사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성인에게 기회가 보장돼 있는 원격 고등교육을 통해 참되고, 창조하며,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③ 인재양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실현한다.

1. 다채로운 교양교육으로 일상생활에서 교육과 학습을 연마하고 즐기는 평생학습인을 육성한다.
2.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 교육으로 전문지식을 실제에 응용하는 전문인을 육성한다.
3. 다원화된 세계 역사발전에 발맞춰 소통과 공영, 평화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인을 육성한다.
4. 인류공영의 인간애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남을 배려하고 이를 실천하는 이타적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제3조(주소지) 우리 대학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에 둔다.

## 제2장 학제와 학생정원

제4조(학제) ① 대학에는 복지학부, 휴먼학부, 실용학부, 교양학부를 두고, 복지학부에는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를, 휴먼학부에는 다문화한국어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복지학과, 군경상담복지학과, 행동재활치료학과를, 실용학부에는 글로벌뷰티학과, 재난안전소방학과, IT비즈니스학과를 둔다. (개정 2012.10.19., 2013.10.21., 2015.10.16., 2016.03.11., 2017.2.17., 2018.01.10., 2019.01.23., 2020.1.13., 2020.9.7., 2021.10.6., 2021.11.19., 2022.3.28.)

② 대학 학부별 계열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10.30.) (개정 2019.01.23., 2020.9.7., 2021.10.6.)

제5조(학생정원) ① 모집단위는 계열로 하고 입학정원 및 학부(과)의 설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0.19., 2013.10.21., 2018.08.17., 2020.7.23., 2020.9.7., 2021.10.6.)

②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3학년 별도 정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7.23.)

##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조기졸업) ① 우리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그러나 본 학칙 제49조 제1항

의 졸업요건 충족 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나, 그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6학기 또는 7학기 만에 졸업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재학연한) 우리 대학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4장 학년 및 학기

제8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연 2학기로 나누며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2주(14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4.)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③ 방학기간 중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수업일수 감축) 천재지변이나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제11조(정기휴업) 휴업일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제12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제6장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13조(입학시기) 신입학(재입학, 편입학을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부터 4주(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4조(입학자격)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5조(지원절차) ①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입학 지원 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사항이 외 별도의 입학전형을 시행하며, 학생선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매 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명시한다.  
(개정 2020.7.23.)

③ 이미 제출한 서류 또는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03.11.)

④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입학전형료를 면제·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6.03.11.) (개정 2018.08.17.)

제16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 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운영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의2(입학사정위원회) ①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학사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6.03.11.)

② 입학사정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운영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구성하고 사정 원칙에 따른 합격 여부를 심의한다. (신설 2016.03.11.)

제17조(입학허가) ① 입학허가는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18.04.18.)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편입학) ① 일반편입학은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 결원 범위 내에서 제2, 3학년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학년 편입학

가. 대학(원격대학, 산업대학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이수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개정 2015.10.16.)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다.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신설 2015.10.16.)

## 2. 3학년 편입학

가. 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② 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제3학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퇴학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동일 학과(전공)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학과(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전공)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2.17., 2018.05.31., 2020.12.14.)

②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한 자는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입학절차) ① 입학허가 예정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일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할 수 없다.

제21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편입학, 재입학 포함)할 수 있다.

1. 기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3.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7장 등 록

제22조(등록) 학생은 학기 개시일 전 등록기일 안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은 수강신청을 필하고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제23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으로 하며,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신청한다.

## 제8장 휴학, 복학, 전과, 자퇴 및 제적

제24조(일반휴학) ① 질병, 임신·출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주 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3.4.)

② 입학 후 첫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기 내 휴학 시, 기 납부한 수업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복학학기로 이월한다. (개정 2016.6.14., 2017.02.17., 2020.12.14., 2022.3.4.)

휴학사유 발생일	이월금액
학기 개시일 전	전액 이월
학기 개시일 기준 30일까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기준 31일~60일까지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기준 61일~90일까지	휴학신청 불가
학기 개시일 기준 91일 이후	<학칙 시행세칙 제 69조 3항>

제25조(입대휴학)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6조(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총 휴학기간은 6학기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5.15.)
1.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2.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

제27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학사유가 소멸되면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 제28조(전과) ① 전과라 함은 학부(과) 및 전공 변경을 말하며, 당해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1학년 1학기 이수자부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8., 2020.1.13.)  
②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학기 개시 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전과한 자는 해당 학부(과)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받으며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학과의 통폐합 및 폐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04.18.)

제2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0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한다. (개정 2020.12.14.)
1. 휴학기간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을 소정기일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성업이 가망 없다고 인정된 자
  4.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학칙을 위배한 자
  5.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받은 자

## 제9장 교과목 이수 및 학점

제31조(교과목)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며, 전공과목은 교과목의 학문적 심도에 따라 전공기초, 전공핵심, 전공심화로 구분한다. (개정 2017.2.17.)

제31조의2(실습 교과) 실습교과는 이론위주 교과목의 단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과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부전공) 부전공 이수 희망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부전공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복수전공)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복수전공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교과목 이수단위)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습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35조(교육과정) ①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제청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05.31)

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수업방법) ① 우리 대학의 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한 자율학습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업은 미리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운영플랫폼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콘텐츠에 대한 수업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부 및 학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0장 시험과 성적

제38조(시험) 교과목별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학기 중에도 시험을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 출결상황, 과제 및 기타 교수가 정한 평가 자료로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실습, 기타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평가는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해당 학기 과목당 전체 수업의 4분의 3 이상 출석한 자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시험 또는 추가시험 및 대체과제 미응시자는 출석 및 기타점수에 상관없이 학점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10.16.)

③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하되 D급 이상을 급제, F급 이하는 낙제로 한다. (개정 2020.7.23.)

등급	점수	평점
A <sup>+</sup>	95~100	4.5
A	90~94	4.0
B <sup>+</sup>	85~89	3.5
B	80~84	3.0
C <sup>+</sup>	75~79	2.5
C	70~74	2.0
D <sup>+</sup>	65~69	1.5
D	60~64	1.0
F	0~59	0
P	Pass	-
NP	Non Pass	-

④ 총점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10.23)

- 1순위 : 출석 성적이 상위인 자
- 2순위 : 기말고사 성적이 상위인 자
- 3순위 : 중간고사 성적이 상위인 자
- 4순위 : 과제 성적이 상위인 자
- 5순위 : 학습참여도, 토론, 퀴즈, 팀프로젝트 성적의 합이 상위인 자

제40조(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추가시험을 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1조(학점 및 졸업 취소) 일단 결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또한 졸업생으로 전기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과 학사학위를 취소한다.

## 제11장 이수의 인정 및 졸업

제42조(이수학점) ① 재학생은 매 학기 18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첫 학기 19학점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② 직전 학기에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는 24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15.10.16., 2019.4.16.)

③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9학점 이내로 하되,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④ 병역의무복무기간 중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42조의2(이수의 인정) ① 학부(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에 따라 기존 학부(과) 학생의 소속은 변경 학부(과)로 본다. (신설 2020.12.14.)

②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입학한 학부(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2.14.)

1.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기타 총장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제42조의3(학점포기) 학생은 자율적인 학점관리를 위하여 이수한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취득학점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0.23.)(개정 2020.12.14.)

제43조(학사경고) ① 매 학기 말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②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또는 통산 5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한다. (개정 2018.04.18.)

제44조(학점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45조(타 대학 및 기관의 학점인정) ① 국·내외 상호교류 대학 및 기관에서 우리 대학의 사전승인을 받아 취득한 성적은 학기당 18학점, 총 35학점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5.31.)  
② 학점교류를 통한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학점교류협약 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8.5.)  
③ 제2항에 의한 인정과목의 성적은 우리 대학의 성적평가 기준으로 환산하여 학업성적표에 기록하며 이를 총 성적평점누계에 합산한다. (신설 2013.8.5.)  
④ 군 휴학 중인 자가 군 복무 중 학점을 취득할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인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4항의 최대 인정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16.)

제46조(수료인정학점) 각 학년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각 학년별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졸업논문 등)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 시험, 기타 졸업인증을 응시 또는 이수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3.)  
② 졸업논문, 시험, 기타 졸업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23.)

제48조(총장 명의 자격증) ① 일정한 과목 이수 및 지정된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자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졸업) ① 다음 각 호에 충족하여 졸업사정에서 통과된 자는 [별표 2]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단, [별표 2]의 학위수여 구분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0.19., 2013.10.21., 2018.10.23., 2019.4.16., 2021.12.17.)

1.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전 학년의 평점평균이 1.5(조기졸업 해당자는 3.0) 이상인 자
3. 졸업논문, 시험, 기타 졸업인증에 합격한 자

- ②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③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 및 제2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 ④ 부전공 이수자는 주전공 및 부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 ⑤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신설 2015.10.16.)

제49조1(명예졸업) ① 본교에 입학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는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0.7.23.)

- ② 명예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7.23.)

## 제12장 등록금

제50조(입학금) 입학 및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수업료) 학생은 매 학기 초 수강신청 완료 후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복학생의 등록금)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3조(등록금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납입금을 반환한다. 단,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 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국가적 재난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0.03.25., 2020.12.14.)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기준 30일까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학기 개시일 기준 31~60일까지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기준 61~90일까지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기준 91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 ③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한 학기 기본 수강신청 학점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 효화된 경우, 매 학기 개강일 이후 수강신청 변경 및 포기에 의해 총 신청학점 수가 줄어든 경우는 등록금 등의 반환이나 감면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4.)

제54조(등록금의 면제) ①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경제상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금 면제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3.11.)

제55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관련 전문가 위원은 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대학 회계 분야에 경험이 있는자로 총장과 총학생회의 협의하에 추천된 자를 위촉한다. (신설 2022.8.29.)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3.25.]

## 제13장 장학금

제56조(장학금) 우리 대학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는 우리 대학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4장 공개강좌, 정원 외 학생

제57조(공개강좌) ①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산업체 근로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들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장소, 수강자격 및 모집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총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소요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위탁생) ①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별도의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협약에 따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한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9조(시간제등록) 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에게 시간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이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간제 등록생은 고교생활(학생)기록부 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등을 전형에 반영하여 선발하며,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은 우리 대학 학생과 통합수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하며, 모집단위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6.03.11., 2019.01.23.)  
⑤ 시간제 등록생의 계절학기는 정규학기 시간제 등록생에 한해 가능하며, 재수강에 의한 낮은 성적을 삭제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한 경우 재수강 성적을 인정한다. 단, 교과목이 폐지되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

체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대체과목이 없는 경우 재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21.6.18.)

⑥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 수강신청, 학적변동, 학위수여 등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0조(외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우리 대학의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제61조(장애인학생)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한다.

제62조(학칙적용) 위탁생, 장애학생, 외국인학생은 본 학칙을 적용하되,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63조(비용징수) 공개강좌,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5장 직제

제64조(직제) 우리 대학의 직제는 법인 이사회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16장 교수회

제65조(구성과 소집) ① 우리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체교수회와 학부(과) 교수회를 둔다. 단, 전체교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사보고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7.22.)

② 전체 교수회는 총장 또는 재적교수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총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학부(과) 교수회는 학부(과)장 또는 재적교수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학부(과)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66조(의결정족수) 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한다. 단, 장기출장이나 휴가 중인 교수는 재적교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67조(심의사항)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 또는 재적교수 1/4 이상이 부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학부(과)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빌의
2. 입학,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당해 학부(과)의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당해 학부(과)의 교육과정 등 조정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학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 제17장 교무위원회

제68조(목적) 우리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69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추가 위촉하는 임명직 교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의 자 이 외의 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70조(소집) 교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다만, 임시회의 소집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다.

제7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교무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1조의2(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학사력에 관한 사항
3.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대학발전계획 및 대학 학사개혁에 관한 사항
5. 대학평가에 관한 사항
6. 전공 정원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8장 학생 활동

제72조(학생회) ① 건학이념과 교시에 입각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3조(학생지도) 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돋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제74조(간행물 발간) ① 학생회는 자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기, 비정기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간행물의 발간 시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5조(금지행위)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76조(징계처분) 이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 제19장 학칙개정

제77조(학칙개정) ① 교육혁신처장은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우리 대학의 구성원이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고 이를 심사한 결과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개정안을 입안하여 이를 유인물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2.8.29.)  
② 공고결과 취합된 의견을 검토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한다.  
③ 총장은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포하여야 한다.

## 제20장 부속·부설기관

제78조(부속·부설기관) ① 우리 대학의 부속·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 지역학습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2.17., 2018.01.10., 2018.08.17., 2020.03.25., 2021.11.19.)  
② 부속·부설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21장 기타

제79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2장 산학협력기구

제80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 진흥 및 촉진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한다.  
②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과장 이상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11.19.]

## 제23장 대학평의원회

제81조(대학평의원회 설치 등) ① 우리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을 대표하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등 11명으로 구성한다.  
③ 기타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8.29.]

##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모집단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조(학생정원)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3.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금융부동산학과, 병원경영학과, 컨벤션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2013학년도부터 학과명칭이 변경된 자산관리학과, 보건복지경영학과, 호텔의료관광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모집단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조(학생정원)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3. (학부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인문학부, 사회학부, 경영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2014학년도부터 학부명칭이 변경된 보건학부, 사회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모집단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조(학생정원)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개정학칙 중 학사일정 상 시행일 이전에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은 2015학년도 2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학부·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보건학부, 사회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2016학년도부터 학부(과)명칭이 변경된 보건복지융합학부, 실용융합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경과조치) 제16조의2, 제58조 4항은 2016학년도 전형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 (경과조치) 제49조 [별표2]에 따른 학사학위 수여는 2016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학년도 이전 입학한 요양시설경영학과 학생은 2016학년도 이전의 학사학위 구분으로 수여한다.
- (경과조치) 제54조 2항은 2016학년도 1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31조는 2016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모집단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조(학생정원)는 [별표 1 : 연도별 입학정원]에 따라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학사학위 수여구분에 따른 경과조치) 제 49조[별표2]에 따른 학사학위 수여는 2017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학년도 이전 입학한 자산관리학과, 문화관광경영학과 학생은 2016학년도 이전의 학사학위 구분으로 수여한다.

###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 47조(졸업논문 등), 제49조(졸업)에 따른 졸업인증은 2019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모집단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조(학생정원)는 [별표1: 연도별 입학정원]에 따라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시간제등록생 입학정원 경과조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정원은 각 해당연도 입학전형시행계획서에 따른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42조(이수학점)에 따른 직전학기 평점평균 변경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경과조치) 제49조(졸업)에 따른 조기졸업 가능 평점평균은 2019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0학년도 1학기 시간제 입학생 등록금 반환 경과조치) 제53조 ②항 4호에 의거 1학기 개강일 기준으로 자퇴 신청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학제), [별표1, 1-2, 2, 4]의 시행일 이전 ‘경영학과’를 ‘IT비즈니스학과’로 변경하고,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학제), [별표1, 1-2, 2, 4]의 실용학부에 ‘ICT 융합학과’를 신설하고,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학과운영을 위한 경과조치) 위 2~3호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학과운영을 위해 시행일부터 제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조항 신설) 제42조의2(이수의 인정)를 신설하고 종전 제 42조의2(학점포기)를 42조의3(학점포기)으로 한다.
3. (2020학년도 2학기 시간제 입학생 등록금 반환 경과조치) 제53조 ②항 4호에 의거 2학기 개강일 기준으로 자퇴 신청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적용일의 유예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4조(학제) 및 부칙에도 불구하고 학적과 관련된 사항은 학기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5.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이전 경영학과 학생은 IT비즈니스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변경 및 신설학과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2]

##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변경 및 신설학과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4조(학제), [별표1, 1-2, 2, 4]와 재적생의 소속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80조(산학협력단)은 관할청 승인 결과에 따라 그 시행일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직제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학처장”을 “교육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연도별 입학정원 (개정 2020.9.7., 2021.10.6.)

2022학년도 입학정원

모집단위	학부	학과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별도 편입학
융합계열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600명	300명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복지학과		
		군경상담복지학과		
	실용학부	행동재활치료학과		
		글로벌뷰티학과		
		재난안전소방학과		
		IT비즈니스학과		
계			600명	300명

2021학년도 입학정원

모집단위	학부	학과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별도 편입학
융합계열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600명	300명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학과		
	실용학부	글로벌뷰티학과		
		재난안전소방학과		
		IT비즈니스학과		
		ICT융합학과		
계			600명	300명

2020학년도 입학정원

모집단위별		1학년	3학년 별도 편입학	합계
복지 학부	사회복지학과	215명	107명	322명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휴먼 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215명	107명	322명
	상담심리학과			
	아동학과			
실용 학부	글로벌뷰티학과	170명	86명	256명
	재난안전소방학과			
	경영학과			
계		600명	300명	900명

2019학년도 입학정원

모집단위별		1학년	3학년 별도 편입학	합계
복지 학부	사회복지학과	250명	80명	330명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휴먼 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200명	130명	330명
	상담심리학과			
	아동학과			
실용 학부	글로벌뷰티학과	150명	90명	240명
	재난안전소방학과			
	경영학과			
계		600명	300명	900명

### 2018학년도 입학정원

모집단위별		1학년	3학년 별도 편입학	합계
복지 학부	사회복지학과	265명	110명	375명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휴먼 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200명	125명	325명
	상담심리학과			
	경영학과			
실용 학부	글로벌뷰티학과	110명	90명	200명
	재난안전소방학과			
계		575명	325명	900명

### 2017학년도 입학정원

모집단위별		1학년	3학년 별도 편입학	합계
복지 학부	사회복지학과	280명	110명	390명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휴먼 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200명	60명	260명
	상담심리학과			
실용 학부	글로벌뷰티학과	145명	105명	250명
	재난안전소방학과			
	경영학과			
계		625명	275명	900명

### 2016학년도 입학정원

모집단위별		1학년	3학년 별도 편입학	합계
보건복지 융합학부	사회복지학과	290명	160명	450명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실용융합 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270명	180명	450명
	상담심리학과			
	문화관광경영학과			
	글로벌뷰티학과			
	자산관리학과			
계		560명	340명	900명

### 2015학년도 입학정원

모집단위별		1학년	3학년 별도 편입학	합계
보건학부	요양시설경영학과	390명	110명	500명
	보건복지경영학과			
	호텔의료관광학과			
사회학부	자산관리학과	330명	70명	400명
	다문화한국어학과			
	심리상담학과			
계		720명	180명	900명

### 2014학년도 입학정원

모집단위별		1학년	3학년 별도 편입학	합계
보건학부	요양시설경영학과	325명	125명	450명
	보건복지경영학과			
	호텔의료관광학과			
사회학부	자산관리학과	280명	170명	450명
	다문화한국어학과			
	심리상담학과			
계		605명	295명	900명

### 2013학년도 입학정원

모집단위별		2013년 입학정원
인문학부	심리상담학과	280명
	다문화한국어학과	
사회학부	자산관리학과	270명
	호텔의료관광학과	
경영학부	보건복지경영학과	350명
	요양시설경영학과	
계		900명

2012학년도 입학정원

모집단위별		2012년 입학정원
인문학부	심리상담학과	300명
	다문화한국어학과	
사회학부	금융부동산학과	300명
	컨벤션학과	
경영학부	병원경영학과	300명
	요양시설경영학과	
계		900명

[별표 1-2] 시간제등록생 입학정원 (신설 2019.01.23.)(개정 2020.9.7., 2021.10.6.)

### 2022학년도 시간제 입학정원

모집단위	학부	학과	입학정원
융합계열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450명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복지학과	
		군경상담복지학과	
		행동재활치료학과	
	실용학부	글로벌뷰티학과	
		재난안전소방학과	
		IT비즈니스학과	
계			450명

### 2021학년도 시간제 입학정원

모집단위	학부	학과	입학정원
융합계열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450명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학과	
계			450명

2020학년도

모집단위별		합계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400명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50명
	상담심리학과	
	아동학과	
계		450명

2019학년도

모집단위별		합계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400명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50명
	상담심리학과	
	아동학과	
계		450명

[별표 2] 학사학위 수여구분 (개정 2020.9.7., 2021.3.25., 2021.10.6.)

#### 2022학년도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부	학과	학위명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보건의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아동복지학과	아동학사
	군경상담복지학과	문학사
	행동재활치료학과	문학사
실용학부	글로벌뷰티학과	이 · 미용학사
	재난안전소방학과	소방학사
	IT비즈니스학과	경영학사

#### 2021학년도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부	학과	학위명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보건의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아동학과	아동학사
실용학부	글로벌뷰티학과	이 · 미용학사
	재난안전소방학과	소방학사
	IT비즈니스학과	경영학사
	ICT융합학과	공학사

2020학년도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부	학과	학위명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보건의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아동학과	아동학사
실용학부	글로벌뷰티학과	이·미용학사
	재난안전소방학과	소방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2019학년도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부	학과	학위명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보건의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아동학과	아동학사
실용학부	글로벌뷰티학과	미용학사
	재난안전소방학과	소방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2018학년도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부	학과	학위명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보건의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실용학부	글로벌뷰티학과	미용학사
	재난안전소방학과	소방학사

2017학년도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부	학과	학위명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보건의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실용학부	글로벌뷰티학과	뷰티학사
	재난안전소방학과	소방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16학년도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부	학과	학위명
보건복지 융합학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보건의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실용융합 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문화관광경영학과	경영학사
	글로벌뷰티학과	뷰티학사
	자산관리학과	경영학사

### 2015학년도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부	학과	학위명
보건학부	요양시설경영학과	경영학사
	보건복지경영학과	경영학사
	호텔의료관광학과	경영학사
사회학부	자산관리학과	경영학사
	다문화한국어학과	문학사
	심리상담학과	심리학사

### 2014학년도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부	학과	학위명
보건학부	요양시설경영학과	경영학사
	보건복지경영학과	경영학사
	호텔의료관광학과	경영학사
사회학부	자산관리학과	경영학사
	다문화한국어학과	문학사
	심리상담학과	심리학사

2013학년도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부	학과	학위명
인문학부	심리상담학과	심리학사
	다문화한국어학과	문학사
사회학부	자산관리학과	경영학사
	호텔의료관광학과	경영학사
경영학부	보건복지경영학과	경영학사
	요양시설경영학과	경영학사

2012학년도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부	학과	학위명
인문학부	심리상담학과	심리학사
	다문화한국어학과	문학사
사회학부	금융부동산학과	경영학사
	컨벤션학과	경영학사
경영학부	병원경영학과	경영학사
	요양시설경영학과	경영학사

[별표 3] 수업료 반환기준 (개정 2020.12.14.)

① 수업료 반환기준표

반환사유 발생일	개정 반환금액	비고
당해 학기 개시일 전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기준 30일까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기준 31~60일까지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기준 61~90일까지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기준 91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② 신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은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업료는 위의 표의 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별표 4] 학부 및 학과의 계열 (신설 2017.10.30.), (개정 2018.01.10., 2019.01.23., 2020.9.7., 2021.10.6., 2021.11.19., 2022.3.28.)

계열		학부	학과
모집단위	학제		
융합계열	인문사회계열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화관광경영학과
			아동복지학과
	자연과학계열	실용학부	군경상담복지학과
			행동재활치료학과
			글로벌뷰티학과
			재난안전소방학과
			IT비즈니스학과

[별지 제1호] 학위증 양식 (개정 2021.12.17.)

① 국문 학위증

제 호

# 학 위 증

0 0 0

0000년 0월 00생

위 사람은 본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칙 제 49조(졸업)』에 의하여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다음의 학위를 수여함.

전 공 : 0 0 0 0 학 ( 0 0 학 사 )

0000년 0월 00일

학 교 인	전 양 교 육 재 단	전 양 사 이 버 대 학 교	총 장
이 사 장	0 0 0	학 위 명	0 0 0

학위번호 : 전양사이버대학교 0000

No. 0000

# Konyang Cyber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on

({o]름})

the degree of  
({학위종류})

with all the right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Daejeon, Korea  
on the 0000 day of 0000, 0000.

---

0 0 0

*Chairman of the board*

0 0 0. (署名)

*President of the University*

Degree Identification Number : 0000



# 학칙시행세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건양사이버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사 행정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는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장 등록

제3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개강 전 지정된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②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는 납입금을 면제한다.

③ 8학기 등록을 마치고 졸업학점 미달로 수학을 계속하게 될 때 잔여 학점수를 고려하여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한다.

④ 징계로 인하여 정학 중에 있는 자도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⑤ 계절학기 등록(수강료)은 학점단위로 징수한다. 다만, 학점당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⑥ 재입학생, 편입학생은 당해학기 신입생에 준하여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전과를 허가받은 자는 당해학기부터 이적학부(과)의 해당학년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정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게는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장 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강신청은 학사계획에 의한 일정기간에 시행하며, 이 기간 중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사유가 된다.
  2. 수강신청의 확인은 학사계획에 의한 일정기간에 시행하며, 이 기간 중에는 학생 본인의 수강신청 내용을 확인한다.
  3. 학생은 수강 신청 시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학부(과) 및 학년별 학점 이수표, 수강신청 요령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4학년 학생은 별도 배부되는 개인별 학점이수 점검표를 통해 졸업학점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복학·재입학 및 편입학자는 그 허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수강신청은 소정의 수강신청서에 소속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얻어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제6조(수강지도) 각 학과장 및 해당 지도교수는 학과의 특성 및 학생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수강과목을 지

도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통계) ① 교육혁신처는 수강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과목별로 수강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수강 통계 결과 수강인원 200명이 초과하는 과목은 분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신설 2016.03.11.)

제8조(수강신청 학점) ① 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42조에 의하되, 최소 12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 단, 졸업학기에는 최소 3학점 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5.15.)

② 장학금 수혜에 필요한 이수학점 기준은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3.11.)

제9조(초과 및 미달학점) ① 학칙 42조의 상한학점을 초과하거나 최소학점에 미달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교육혁신처는 해당 학과 학과장에게 통보하여 이수범위 내에서 신청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3.1.1.)

② 수강신청 확인기간 내에 초과학점을 정정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혁신처장 직권으로 수강신청서의 하단과목부터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최소학점에 미달 신청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과장에게 별도의 지도를 의뢰하여 정정토록 한다. (개정 2013.1.1., 2022.8.29.)

③ 졸업예정자로 졸업학점에 1학점이 미달인 경우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 1과목을 초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9.11.1., 2022.8.29.)

제10조(학점취소) 임의로 수강한 과목과 동일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 2(학점포기) ① 학점 포기의 신청대상자는 졸업학기인 학생으로 학기 중 1회에 한하여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23.)

② 마지막 학기의 계절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포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7.10.23.)

③ 학점 포기한 과목은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환불받을 수 없다. (신설 2017.10.23.)

④ 졸업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8학점까지만 포기가 가능하다. (신설 2017.10.23.)

⑤ 포기한 학점은 졸업사정에서 제외되며,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할 수 없다. (신설 2017.10.23.)

⑥ 학점포기된 과목은 성적표에서는 삭제하며 학적부에서는 별도 표기한다. (신설 2017.10.23.)

제11조(수강신청과목 변경)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의 폐강, 분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간을 따로 정하여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얻어 교육혁신처에서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제12조(삭제 2021.6.18)

제13조(교과목의 포기) ① 개강 후 4주 이내에 교과목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단, 실습과목의 경우 국가 재난으로 해당학기 실습이 불가한 경우 해당학기 종강이내 해당교과목을 포기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4.)

② 허가 없이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되며 정식 허가를 얻어 포기한 과목은 성적평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4조(재수강) ① 학생은 자율적인 성적관리를 위하여 이미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취득 성적에 제한받지 않고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② 재수강에 의한 낮은 성적을 삭제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한 경우 재수강 성적을 인정한다. (개정 2021.6.18.)

③ 교과목이 폐지되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대체과목이 없는 경우 재수강할 수 없다. (신설 2021.6.18.)

제15조(재·편입학생의 수강신청) 재·편입학생의 수강신청 절차는 재학생과 같다.

## 제4장 교육과정의 구성 및 이수

제16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양과 전문지식의 균형을 이루며 학문의 특수성과 교과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인접학문과의 중복을 피하여 교육기능을 유기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과정운영위원회) 총장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교육과정의 변경)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부위원(기관) 혹은 학부(과) 교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제청으로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8.05.31., 2022.8.29.)

제19조(복학 및 재입학자의 학점이수) 복학, 재입학한 학생이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을 때에는 복학 또는 재입학년도의 교육과정표에 의거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학생 교육과정 운영) 외국인 학생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내국인 학생과는 달리 별도의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교육과정의 구조) 교육과정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자유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05.31)

제22조(교육과정의 이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교과목코드에 따른다. (개정 2020.9.7)

제23조(이수학점) 학생은 재학기간 중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과별 최소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0.19., 2013.10.21.)

## 제5장 수업

제24조(수업방법) 수업은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정보통신매체에 의해 온라인으로 수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목별 오프라인수업, 현장실습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25조(강의계획서 제출) ① 교수는 해당학기 강의계획서를 학기가 개시되기 전 소정의 기간 내에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강의계획서는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강의책임시수) ① 전임교수의 주당 강의책임시수는 12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2.17.)

② 보직교수 및 특성화분야 담당교수의 주당 강의책임시수는 따로 정한다.

③ 과목이 분반되어 운영될 경우, 분반과목의 시수는 전임교수의 주당 강의책임시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3.11.)

제27조(폐강) 전공과목은 30명, 교양과목은 30명 미만의 경우에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운영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1.23)

제28조(폐강과목처리) 수강신청 결과 학생수 미달로 폐강될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그 폐강과목을 교육혁신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9.01.23)

제29조(타교출강) ① 전임교원의 타 대학 출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주 1일 이내로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법인 대학에 한하여 학기당 분반포함 총 1주 1일 3시간 이내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2.3.4.)

## 제6장 시험과 성적

제30조(시험) 학칙 제38조에 규정한 시험은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로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실시하고 수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31조(시험시간표) 정기시험 개시 1주일 전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32조(시험자격) 학기말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한다.

1. 해당학기 수업시수의 3/4이상 출석한 자.
2. 공결에 의한 자는 수업시간의 1/2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가 공결을 합하여 3/4이상 되는 자. 다만, 교위선양을 위한 출전 준비 등으로 총장의 별도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성적평가 및 분류) ①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학기 초부터 성적 산출 시까지의 시험, 출결, 과제, 퀴즈 등이 합산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② 학생성적등급 분포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단, 실습교과, 교내·외 위탁교육 교과, 수강인원 30명미만인 교과, 신·편입생 필수 이수 지정 교과 및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과, 외국인 유학생, 장애학생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16., 2020.7.23.)

등급	분포율
A <sup>+</sup> ~ A <sup>0</sup>	0~40 %
A <sup>+</sup> ~ B <sup>0</sup>	0~80 %
C <sup>+</sup> ~ F	20% 이상

③ (삭제 2020.7.2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는 실점과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Pass)와 낙제(Non Pass)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급제는 P등급, 낙제는 NP등급으로 표시한다. 급제와 낙제의 이수 기준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7.23.)

제34조(성적의 등급) ① 평점평균에 의한 성적등급은 다음에 의한다.

평점평균	등급
4.25 이상	A <sup>+</sup>
3.75 ~ 4.24	A <sup>0</sup>
3.25 ~ 3.74	B <sup>+</sup>
2.75 ~ 3.24	B <sup>0</sup>
2.25 ~ 2.74	C <sup>+</sup>
1.75 ~ 2.24	C <sup>0</sup>
1.25 ~ 1.74	D <sup>+</sup>
0.75 ~ 1.24	D <sup>0</sup>
0.74 이하	F

② 평점평균(X)의 백분위점수(Y) 환산은 다음의 산출식을 적용한다. 단, Y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X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개정 2021.6.18.)

$$\circ Y = 60 + (\text{평점평균} - 1) \times 10 + 5$$

제35조(평점평균) ① 성적 평점평균 산출 방법은 성적 평점계를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눈다. 다만, 낙제(F급) 교과목에 대하여는 동일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총 성적평균 산출시 낙제과목의 학점은 수강신청 학점 수에서 제외한다.

②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P등급 또는 NP등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7.23.)

제36조(추가시험) ① 제58조 1항의 각 항목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과목담당교수가 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에 추가시험 또는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15.10.16.)

② 추가시험 및 과제는 과목 담당교수의 계획 책임 하에 실시한다. (개정 2013.8.5.)

③ 추가시험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④ 추가시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5.)

1. 추가시험1 (시험유형)
2. 추가시험2 (과제유형)

⑤ 추가시험의 점수는 본시험 점수의 범위 내에서 교수 재량으로 한다. 단, 제58조 1항의 각 항목 사유 이외의 경우 득점의 20%를 감점한다. (신설 2013.8.5.) (개정 2015.10.16.)

제37조(부정행위) 시험 중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성적을 취소한다.

제38조(성적처리) ① 성적은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혁신처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졸업사정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과목 담당교수가 기록 날인하여 교육혁신처에 제출한 성적은 교수나 취급자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③ 입영대상자의 경우,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출석 후 입영할 시 중간시험으로 당해학기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④ 과목별 담당교수는 성적 제출 시 평가요소별 점수가 기재된 출석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성적발표) 교육혁신처장은 성적을 다음 학기 등록개시 10일 전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2.8.29.)

제40조(학사경고) 한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달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며, 학사경고의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장 부전공

제41조(범위) 부전공은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전공)의 부전공과목을 이수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적성 및 수학 능력과 학과(전공)의 수용능력에 따라 부전공 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05.31.)

제42조(신청시기 및 절차) 우리 대학 학생 중 누적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3.0) 이상이며, 2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는 주전공 외에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원을 해당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학사팀에 제출, 승인 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은 1학기 이수 후 평균평점의 자격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다. (개정 2013.1.1., 2013.8.5.)

제43조(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 부전공 신청자는 부전공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각 학과(전공)는 필요에 따라서는 선수과목을 과할 수도 있다. (개정 2018.05.31.)

③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 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부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부전공 주임교수가 담당한다.

제44조(실습비) 실습을 요하는 과목을 부전공으로 택할 경우 실습에 따르는 비용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이수사정) ① 부전공 이수사정은 부전공학과에서 하되 주전공 이수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취한다.

- ② 부전공 이수자가 부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부전공 승인 후에는 부전공 과목으로 이수구분이 전환된다.
- ③ 주전공과 부전공학과에서 동일하게 운영되는 교과목의 경우 주전공 학점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수구분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수구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03.25.)
- ④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거나 이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 이수학점을 자유선택 학점으로 대체 인정한다. (개정 2021.03.25.)
- ⑤ 부전공 이수를 위하여 졸업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

## 제8장 복수전공

제46조(범위) 복수전공은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전공)의 복수전공과목을 이수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적성 및 수학능력과 학과(전공)의 수용능력에 따라 복수전공 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05.31)

제47조(신청시기 및 절차) 우리 대학 학생 중 누적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3.0) 이상이며, 2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는 주전공 외에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원을 해당 주임교수를 경유, 교무학사팀에 제출, 승인 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은 1학기 이수 후 평균평점의 자격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다. (개정 2013.1.1., 2013.8.5.)

- 제48조(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 복수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중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 ② 각 학과(전공)는 필요에 따라서는 선수과목을 과할 수도 있다. (개정 2018.05.31.)
  - ③ (삭제 2019.01.23.)
  - ④ 복수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복수전공 주임교수가 담당한다.

제49조(실습비) 실습을 요하는 과목을 복수전공으로 택할 경우 실습에 따르는 비용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50조(이수사정) ① 복수전공 이수사정은 복수전공학과에서 하되 주전공 이수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취한다.
- ②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복수전공 승인 후에는 복수전공 과목으로 이수구분이 전환된다. (개정 2021.03.25.)
  - ③ 주전공과 복수전공학과에서 동일하게 운영되는 교과목의 경우 주전공 학점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수구분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수구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03.25.)
  - ④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거나 이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 이수학점을 자유선택 학점으로 대체 인정한다. (개정 2018.05.31.)
  - ⑤ 복수전공 이수를 위하여 졸업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

## 제9장 계절학기

제51조(계절학기) 특별한 경우 동·하기 방학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수강 이수하도록 하되, 그 기간 및 제반 절차는 매학기 학기말 시험 종료 전까지 이를 공고한다.

제52조(개설과목) 강좌의 개설과목은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 중 기본과정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과목도 개설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자 수가 10명 미만일 때는 이를 폐강할 수 있다. (개정 2017.2.17., 2020.7.23.)

제53조(수강신청 및 강의시간) ①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9학점 이내로 하되, 직전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② 계절학기의 강의시간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총 수업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평가를 한다.

제54조(등록) ① 계절학기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과 수강료 납부를 필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강료는 감액, 면제 또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폐강된 수강료는 환불한다.

② 계절학기의 학점 당 수강료는 공고 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성적처리 방법은 일반학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56조(학점인정) ① 계절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과목의 이수와 학점을 인정한다.

② 이수를 인정받은 교과목은 학적부상 졸업소요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사경고,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게 처리한다.

## 제10장 출석

제57조(출석인정기간) ① 온라인 수업의 출석 인정기간은 해당 주차의 수업 개시 후 2주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실습과목
2. 수강변경기간에 변경된 과목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16., 2018.05.31.)

② 출석인정기간에 해당 수업을 75%이상 수강할 경우 출석점수를 부여하며, 학습시간 준수정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③ 출석인정기간을 지나 해당 수업을 최초로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지각 3회의 경우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제58조(공결 및 병결) ① 다음의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직계존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 (개정 2013.8.5.)
2. 병역의무 이행 (개정 2013.8.5.)
3. 학교를 대표하여 대외행사 참가 시 (개정 2013.8.5.)
4. 학술답사 및 교육실습 참가 (개정 2013.8.5.)
5. 본인의 결혼 (개정 2013.8.5.)
6. (삭제 2013.8.5.)
7. (삭제 2013.8.5.)
8. 수술 또는 중병으로 인한 입원, 출산 (신설 2013.8.5.)
9. 오지 출장 (신설 2013.8.5.)
10.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 (신설 2013.8.5.)

② 위 항목의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과목별 출석인정은 학기별 전체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8.5.)

제59조(결석계 제출방법 및 시기) 공결 및 병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공결 신청서 또는 병가신청서를 결석사유 발생 전후 1주일 이내에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 해당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제60조(출석기준) ① 수강자는 총 수업 분량의 3/4미만 수강 시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해당 교과목을 F로 처리한다. 단, 실습과목은 예외로 한다.

② 출석기준 미달자 선정 기준일은 매학기 기말고사 종료일로 한다.

제61조(대리출석 금지) ① 학생은 본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로그인시 통합인증(생체, 보안PIN, 패턴, 모바일OTP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14.)

② 제3자에 의한 대리출석을 금지하며 적발된 경우 징계조치 할 수 있다.

## 제11장 전과

제62조(전과) ① 전과는 당해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학년 1학기 이수자부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8., 2020.1.13.)

②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학기 개시 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13.)

③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학사변동기간 내에 소정의 원서에 소속 학부(과)장, 전과 학부(과)장을 경유, 교육 혁신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 2018.05.31.)

④ (삭제 2020.1.13.)

⑤ 전과를 지망하는 자가 허가예정인원을 초과할 때는 성적순위로 허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선발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63조(과목이수) ①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입학과의 사정에 의거 총장으로부터 승인된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입학과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전과 전의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고, 전과한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자유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1.13.)

## 제12장 재입학 및 편입학

제64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학기 초에 허가한다.

② 재입학 대상자는 자퇴 또는 퇴학으로 제적된 당해학기를 제외한 1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여야 한다. 단, 입학 및 학위취소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18.04.18., 2020.12.14.)

③ 재입학자는 제적 또는 자퇴 이전에 이수한 전 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미 취득한 선수 및 필수과목은 타 과목에 우선하여 수강 이수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 시기는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⑤ 재입학을 허가할 때에는 자퇴 또는 제적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단,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한 인접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2.17.)

⑥ 재입학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⑦ 재입학자는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편입학)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편입학원서를 편입학 전형 절차에 따라 응시해야 한다. (개정 2013.1.1., 2020.12.14.)

제66조(학점인정기준) ①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양과목 : 편입학과의 교과과정에 규정된 학점의 범위에 한하여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총학점 중 최대 2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18.05.31)

2. 전공과목 :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중 편입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8.5.)

3. 자유선택과목 : 편입학과의 교과과정에 규정된 학점의 범위에 한하여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총 학점 중 교양 또는 전공과목의 인정학점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학점을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5.31.)

4. (삭제 2013.8.5.)

5. 편입학생의 편입학한 학년의 전 과정은 그 이수를 인정하고 편입학한 이후의 소정학점만 이수케 한다. (개정 2013.8.5.)

6. 전적학교 교과 이수과목 중 전공 및 교양과목 등은 전적학교 이수학점으로 적용한다. 단, 전적학교의 이수학점이 우리 대학의 학점보다 클 경우 우리 대학의 이수학점을 적용한다. (신설 2013.8.5.)

② 전적대학 학점인정의 최대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로하며, 이외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8.08.17.)

1. 2학년 편입학: 35학점

2. 3학년 편입학: 70학점

③ 재·편입학 허가 상신에는 재·편입학 학부(과)장이 사정책임자로 서명 날인한 성적 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31.)

제67조(성적처리) 편입학생의 성적처리는 편입학한 이후의 성적만을 가지고 총 평점평균을 산출하며, 성적 부상의 표기는 전적대학 인정학점 ○○점이라고만 표기한다.

제68조(학사편입학) ① 학사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학사편입학 원서를 학사편입학 전형 절차에 따라 응시해야 한다. (개정 2013.1.1., 2020.12.14.)

② 학사편입학은 일반편입학의 절차에 따라 제3학년에 입학을 허가한다.

## 제13장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69조(일반휴학) ① 질병, 임신·출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주 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휴학원을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18., 2022.3.4.)

② 휴학원 제출 시기는 매학기 학적변동기간으로 하며, 기간내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신설 2022.3.4.)

③ 학적변동기간 이후 휴학의 허가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며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22.3.4.)

④ 1학년의 경우 질병, 임신·출산 이외의 일반휴학은 금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3.4.)

⑤ 임신·출산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휴학 사유를 증빙할 서류(임신확인서 등)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3.4.)

제70조(입대휴학) ① 군에 입대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휴학원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 2022.3.4.)

② 휴학원 제출 시기는 매학기 학적변동기간으로 하며, 기간내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신설 2022.3.4.)

③ 학적변동기간 이후 휴학의 허가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며, 입영일 기준 15일 이전까지 휴학원을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3.4.)

④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적 처리 후 휴학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3.4.)

⑤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나 입대휴학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1회에 4학기로 허가한다. (신설 2022.3.4.)

⑥ 입대 휴학한 학생 중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혁신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3.4.)

⑦ 일반휴학 중 군입대할 경우에는 입대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휴학의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22.3.4.)

- 제71조(복학) ① 일반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매학기 개강 전(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군입대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 복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72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신청원을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1.)

- 제73조(자퇴 시기) ① 자퇴신청원의 제출 시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정규학기 성적 확정일 이전에 자퇴신청을 할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74조(제적) 학칙 제30조에 따라 제적이 된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적된 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5조(제적시 등록금 환불) ① 등록 후 자퇴 및 제적될 경우 학칙 제 53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② 등록금 환불은 제적사유 발생일 또는 자퇴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장 졸업

- 제76조(수료인정학점) ① 우리 대학의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최소 이수 학점	최대 취득 학점
제 1학년	35학점	48학점
제 2학년	70학점	96학점
제 3학년	105학점	144학점(140학점 이상 조기졸업)
제 4학년	140학점	-

- 제77조(졸업기준) ① 8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학칙 제49조에 규정된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부·복수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연기를 원할 경우,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한 학기를 연기할 수 있다. 단, 최대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학칙 제6조에 의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조기졸업 직전학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평점평균은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3.11., 2019.04.16)  
 ④ 재학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전공 학과의 교육과정에 의한다. (개정 2020.9.7.)  
 ⑤ 교과목의 이수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목 최소 이수학점표[별표1]에 정한 이수구분별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2013.10.21.)  
 ⑥ 삭제 (2020.9.7)  
 ⑦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졸업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제78조(졸업논문 또는 시험) ①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는 최종 이수학기 이전에 졸업논문 제출 또는 졸업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②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졸업논문 또는 시험은 수학한 전공학문에 대한 응용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평가되어야 하며, 사정에 있

어서는 합격·불합격만을 사정한다.

- ④ 졸업논문 또는 시험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수료로 인정한다. 단, 수료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검기회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⑤ 교육과정에 규정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칙 제49조의 [별표2]에 지정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⑥ 졸업논문 또는 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8조2(졸업인증) ① 졸업인증이라 함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본 학칙 제 47조에 따라 졸업 논문, 시험 외 자격증, 작품 등을 통과 또는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0.23.)

- ② 졸업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0.23.)

제79조(졸업사정) 졸업은 각 학과별로 사정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 제15장 조기졸업

제80조(학위수여) 이 규정은 학칙 제 49조에 따라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잔여학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졸업정원에 관계없이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81조(조기졸업)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해당 학기의 정규수업이 종료된 이후로는 추가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조기졸업신청자 중 졸업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잔여학기를 등록, 이수해야 한다.

-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6장 증명

제82조(학적부 기록보관) ① 교육혁신처는 입학(편입학 포함) 허가 후 60일 이내에 개인별 전산학적부의 과정을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졸업·수료·제적 30일 이내에 학적부를 출력·비치하고, 졸업·수료·제적 3년 경과 후 CD 또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복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② 학생의 학적 및 신분상의 제증명은 학적부의 등재사항에 의한다.

제83조(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제증명발급) ① 학사에 관한 제 증명서는 총장이 발행한다.

- ② 제 증명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한다.

1. 재학증명서

2. 재적증명서
3. 수료증명서
4. 졸업증명서
5. 졸업예정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학적부 증명
8. 교과과정이수(예정) 증명서
9. 학생증
10. 기타 학사에 관한 증명서

③ 제 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증명 수수료와 증명서 교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증명서는 작성자와 대조자가 날인하고 발급자의 직인과 계인을 날인한다.

제85조(신상관계증명) 우리 대학에서 발행하는 신상관계증명서 및 확인서는 추천서, 사실증명서 및 기타 신상관계 확인증명서 등이 있다.

## 제17장 성적열람과 이의신청

제86조(신청서 보관) 수강신청서는 학과별, 학년별로 분류, 편철하여 졸업 후 1년까지 보관한다.

제87조(성적발송) 매학기 성적표는 소정의 기일 내에 학생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

제88조(이의신청) 교부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성적확인/정정기간 내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성적정정) 성적의 기재착오,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성적정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과목 담당교수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90조(성적표보관) 성적표는 졸업 시까지 소중히 보관하고, 교과과정이수에 활용하여야 한다. 교부받은 성적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성적표사본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성적표 사본 발급절차는 제증명 발급절차에 의한다.

제91조(학적열람) 학생은 본인의 학적부를 열람할 수 있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개정세칙 중 학사일정 상 시행일 이전에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은 2015학년도 2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6조 3항의 사항은 분반과목이 시행된 학기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제8조 2항의 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4. (경과조치) 제77조 3항의 사항은 2016학년도 개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6조 1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제52조는 2016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14장 졸업 제78조2(졸업인증)에 따른 졸업인증은 2019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77조(졸업기준)에 따른 조기졸업 가능 평점평균은 2019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명칭변경 및 신설학과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1]

###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명칭변경 및 신설학과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1]

###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43조(이수학점 및 수강지도)에 따른 부전공 이수학점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경과조치) 제48조(이수학점 및 수강지도)에 따른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2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직제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학처장”을 “교육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1] 학과별 최소이수학점 (개정 2020.9.7., 2021.03.25., 2021.12.17.)

2022학년도 학과별 최소이수학점

학부	학과	교양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이수
				제1전공	제2전공	주전공	부전공	
복지 학부	사회복지학과	24	42	42	42	42	21	140
	노인복지학과	24	42	42	42	42	21	140
	보건의료복지학과	24	42	42	42	42	21	140
휴먼 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24	42	42	42	42	21	140
	상담심리학과	24	42	42	42	42	21	140
	아동복지학과	24	42	42	42	42	21	140
	행동재활치료학과	24	42	42	42	42	21	140
	군경상담복지학과	24	42	42	42	42	21	140
실용 학부	글로벌뷰티학과	24	42	42	42	42	21	140
	재난안전소방학과	24	42	42	42	42	21	140
	IT비즈니스학과	24	42	42	42	42	21	140
	ICT융합학과	24	42	42	42	42	21	140

2021학년도 학과별 최소이수학점

학부	학과	교양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이수
				제1전공	제2전공	주전공	부전공	
복지 학부	사회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노인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보건의료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휴먼 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상담심리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아동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실용 학부	글로벌뷰티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재난안전소방학과	24	48	48	48	48	24	140
	IT비즈니스학과	24	48	48	48	48	24	140
	ICT융합학과	24	48	48	48	48	24	140

2020학년도 학과별 최소이수학점

학부	학과	교양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이수
				제1전공	제2전공	주전공	부전공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노인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보건의료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상담심리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아동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실용학부	글로벌뷰티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재난안전소방학과	24	48	48	48	48	24	140
	경영학과	24	48	48	48	48	24	140

2019학년도 학과별 최소이수학점

학부	학과	교양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이수
				제1전공	제2전공	주전공	부전공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노인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보건의료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상담심리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아동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실용학부	글로벌뷰티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재난안전소방학과	24	48	48	48	48	24	140
	경영학과	24	48	48	48	48	24	140

### 2018학년도 학과별 최소이수학점

학부	학과	교양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이수
				제1전공	제2전공	주전공	부전공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노인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보건의료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상담심리학과	24	48	48	48	48	24	140
	경영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실용학부	글로벌뷰티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재난안전소방학과	24	48	48	48	48	24	140

### 2017학년도 학과별 최소이수학점

학부	학과	교양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이수
				제1전공	제2전공	주전공	부전공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노인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보건의료복지학과	24	48	48	48	48	24	140
휴먼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상담심리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실용학부	글로벌뷰티학과	24	48	48	48	48	24	140
	재난안전소방학과	24	48	48	48	48	24	140
	경영학과	24	48	48	48	48	24	140

### 2016학년도 학과별 최소이수학점

학부	학과	교양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이수
		필수	선택		제1전공	제2전공	주전공	부전공	
보건복지융합학부	사회복지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노인복지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보건의료복지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실용융합학부	다문화한국어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상담심리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문화관광경영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글로벌뷰티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자산관리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 2015학년도 학과별 최소이수학점

학 부	학 과	교양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이수
		필수	선택		제1전공	제2전공	주전공	부전공	
보건학부	요양시설경영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보건복지경영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호텔의료관광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사회학부	자산관리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심리상담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다문화한국어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 2014학년도 학과별 최소이수학점

학 부	학 과	교양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이수
		필수	선택		제1전공	제2전공	주전공	부전공	
보건학부	요양시설경영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보건복지경영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호텔의료관광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사회학부	자산관리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심리상담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다문화한국어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 2013학년도 학과별 최소이수학점

학 부	학 과	교양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이수
		필수	선택		제1전공	제2전공	주전공	부전공	
인문학부	심리상담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다문화한국어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사회학부	자산관리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호텔의료관광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경영학부	보건복지경영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요양시설경영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2012학년도 학과별 최소이수학점

학부	학과	교양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이수
		필수	선택		제1전공	제2전공	주전공	부전공	
인문학부	심리상담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다문화한국어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사회학부	금융부동산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컨벤션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경영학부	병원경영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요양시설경영학과	12	12	48	48	48	48	24	140

[별표2] 이수구분변경신청서 (신설 2021.03.25.)

## 이 수 구 분 변 경 신 청 서

결 재	담 당	파트장	팀 장	처 장

소 속	학 과		부·복수 전공		성 명
	학 번		학년	학년	
구 분	복수전공 ( )			부전공 ( )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이수구 분	과목명		이수구 분	과목명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구분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건양사이버대학교 총장 귀하

■ 안내사항

- 학칙시행세칙 제45조(이수사정), 제50조(이수사정)에 의거하여 이수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